#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장동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31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0.

발 의 자: 장동혁 · 김도읍 · 김소희

박정하 • 박덕흠 • 서범수

김상훈 • 인요한 • 곽규택

조배숙 • 이인선 • 백종헌

정점식 · 김 건 · 이성권

신성범 • 유상범 의원

(179]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정보원은 오랜 기간 대공수사를 전담해 왔으나 경찰로 수사권을 이관하도록 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간첩수사와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따라 국내 대공수사 역량은 현격히 저하되고, 수십 년간 축적 되어 온 국정원의 수사경험 등이 그대로 사장되는 등 심각한 안보공 백이 우려되고 있음.

따라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다변화하고 있는 국제 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이익을 지켜 내려는 것임(안 제8조의2 신설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장동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730호) 및 「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72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#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국가정보원 직원)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제1항제3호의2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8조의2(국가정보원 직원) 국가
	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
	장이 지명하는 자는 「국가정
	보원법」 제4조제1항제3호의2
	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
	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.